

**성동구도시관리공단
이사장 경영성과계약서**

2014. 10.

성 동 구
성동구도시관리공단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계약의 목적) 이 계약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(이하 ‘이사장’이라 한다)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,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, 성과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이하 ‘구청장’이라 한다)과 이사장 간에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공단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(계약의 체결) ① 구청장과 이사장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, 이 계약서에 각각 날인(또는 서명)함으로써 이 계약은 성립된다.
② 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 3 조(계약기간)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2017년 10월 15일까지로 한다.
② 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,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.

제 4 조(이사장의 권한과 책임) ① 이사장은 공단의 최고경영자로서 공단을 대표하고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② 이사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이하 “설립 및 운영 조례”라 한다),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.

③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, 설립 및 운영 조례, 공단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, 제7조에서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5 조(청렴·공정한 직무수행) ① 이사장은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,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수수, 사례,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제 6 조(임기 중 겸직제한 등) ① 이사장은 공단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이사장은 퇴임 후 2년 동안 공단과 경쟁관계 또는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기관(기업체)의 직위에 취임하거나 대가를 받고 그 기관(기업체)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. 다만 이사회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이사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득한 공단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그 기밀을 이용하여 공단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안 된다.

④ 이사장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.

제 2 장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

제 7 조(경영목표) ① 이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별표 2와 같다.

② 이사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 8 조(경영실적 보고) 이사장은 매년 경영목표에 대한 당해 연도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5월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이사장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) ① 이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(이하 “목표이행실적평가”라 한다)는 구청장이 행하며, 경영실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목표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별 가중치와 평가기준, 목표치와 기준치는 별표 3과 같다.

③ 목표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평가등급을 부여하며,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제10 조(경영성과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) ① 이사장의 경영성과(“안전행정부 장관이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제9조에서 규정하는 목표이행실적평가”를 말한다)는 성과급 및 기본연봉에 반영한다.

② 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시키거나 임기 중이라도 해임시킬 수 있으며, 그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.

③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2인 이상의 이사장이 재임한 경우의 성과 인센티브는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며,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한다.

다만, 연봉조정과 연임 또는 해임조치는 재임 중인 이사장에만 적용한다.

제 3 장 보수 및 복리후생

제 11 조(보수체계) 이사장의 보수는 기본연봉,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하며 그 지급 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- 제 12 조(기본연봉) ① 이사장의 임기 중 기본연봉액은 별표 1과 같으며 매월 12분의 1씩 공단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.
- ② 전항의 기본연봉에는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.
- ③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하며, 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- ④ 제3항에 의하여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연도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, 그해 12월 보수지급일에 정산한다.
- ⑤ 이사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,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- 제 13 조(성과급) ① 이사장의 성과급은 구청장이 정하는 지급률에 월 기본급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, 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.
- ② 성과급 지급시기는 성과급이 확정된 연도의 1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이사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- 제 14 조(보수 지급후의 조정) ① 이사장에게 성과급 및 연봉 등 보수를 지급한 이후에 조세환급, 오류의 발견,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보수 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.
- ② 이사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다음 연도의

보수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 퇴임한 이사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,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장이 그 금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.

- 제 15 조(퇴직금) ① 퇴직금은 이사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,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로 한다.
- ②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는 이사장이 재임시 지급 받은 기본연봉을 재임한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.
- ③ 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- 제 16 조(복리후생 등) ① 공단은 이사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.
- ② 이사장의 휴가, 의료, 보건관리, 기타 비금전적 복리후생적 혜택은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 장 기 타

- 제 17 조(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) ① 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1. 정부정책, 성동구정책,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
 2.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, 여건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
 3. 경영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도·조언·권고한 경우

② 제1항에 의한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18 조(계약의 해석)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이사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청장의 해석에 의한다.

제 19 조(권리의 귀속) 이사장이 재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, 특허권, 등록상표, 아이디어 및 기타 모든 지적재산권은 공단에 귀속되며,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.

제 20 조(세금)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징수한다.

제 21 조(계약서의 보관)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.

부 칙

제 1 조(계약기간) 제3조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초 임명일로부터 임기 3년 이내로 정한 것이며, 안전행정부의 이사장경영성과계약 운영계획에 의한 것으로 계약 체결일과는 무관하다.

제 2 조(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실시시기) 제9조에 의한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는 본 계약서가 체결된 2014년도의 경영목표에 대한 이행실적부터 실시한다.

제 3 조(성과 인센티브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) 2014년도 경영성과평가(경영평가,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) 결과는 이사장의 성과급 및 연임보장의 사유로 적용하되, 연봉조정 및 해임은 2015년도 경영성과평가가 실시되는 2016년부터 적용한다.

지방공기업법과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및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관에 따라 성동구청장 정원오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수는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경영계약을 체결함.

2014년 10월 일

성 동 구 청 장 (인)
정 원 오

성동구도시관리공단 (인)
이사장 김 종 수

- 별 표 1. 기본연봉
2. 경영목표
3.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기준
4.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
5. 연임보장 사유
6. 임기 중 해임사유
7. 연봉 조정표
8. 성과급 지급률

[별표 1 : 기본연봉]

기본연봉	52,435,560원
성과연봉	경영성과에 따라 12월에 지급
부가급여	연봉제규정 준용

[별표 2. 경영목표]

경영목표	평 가 기 준	배점
① 공공서비스 품질 혁신	(1) 고객서비스에 대한 직원 마인드 증진	5
	(2) 고객만족도 점수	10
	(3) 윤리경영 추진	5
② 사업목표 달성	(1) 수입목표 달성률	10
	(2) 대행사업비 절감률	10
③ 사업분야 전문성 강화	(1) 시설관리 분야: 에너지절감 목표 달성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	10
	(2) 체육 분야: 특기 특화 프로그램 개설 운영 및 고객편의제도 개선	10
	(3) 문화예술 분야: 지역주민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공연 유치 및 이용 증대	10
	(4) 도서관 분야: 양질 정보·다양한 학습문화 기회 제공	10
	(5) 주차 분야: 경상사업 외 추가 수입 창출 노력	10
④ 정부정책준수	(1) 행안부 정책준수	5
⑤ 발전적 노사 문화 정착	(1) 노사협력 프로그램 운영실적	5
계		100

[별표 3.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기준]

1. 공공서비스 품질 혁신 (20점)

(1) 고객센터서비스에 대한 직원 마인드 증진(5점)

- 목 표: 고객센터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고객센터서비스 증진 프로그램 운영
- 근 거: 평가연도 사업계획
- 기 준: 고객센터서비스 직원 마인드 향상 프로그램 이행 건 수

평가등급 (점수)	100점(S) (5점)	90점(A) (4점)	80점(B) (3점)	70점(C) (2점)	60점(F) (0점)	비 고
이행건수	7건 이상(목표)	6건 이상	5건 이상	4건 이상	4건 미만	기준치 70점

(2) 고객만족도 점수(10점)

- 고객만족도 점수: 행안부 주관(경영평가)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만족도 배점의 획득

평가등급 (점수)	100점(S) (10점)	90점(A) (8점)	80점(B) (6점)	70점(C) (4점)	60점(F) (0점)	비 고
배점획득률	85% 이상	80% 이상	70% 이상	60% 이상	60% 미만	기준치 70점

※ 세부평가 내역은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편람에 의함

(3) 윤리경영 추진(5점)

- 목 표: 윤리경영을 통한 청렴 공단 이미지 제고
- 근 거: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
- 기 준: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평가연도 공공기관 평균치 적용

평가등급 (점수)	100점(S) (5점)	90점(A) (4점)	80점(B) (3점)	70점(C) (2점)	60점(F) (1점)	비 고
점 수	8.5 이상 (목표치)	8.5 미만 ~ 8.4 이상	8.4 미만 ~ 8.3 이상	8.3 미만 ~ 8.2 이상	8.2 미만~ 8.1 이상	기준치 60점

※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0점 처리

2. 사업목표 달성 (20점)

(1) 수입목표 달성률(10점)

- 목 표: 전년도 수입대비 3% 이상을 목표치로 설정, 달성률 적용
- 근 거: 평가연도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편람
- 기 준

평가등급 (점수)	100점(S) (10점)	90점(A) (8점)	80점(B) (6점)	70점(C) (4점)	60점(F) (0점)	비 고
달성률	100% 이상	95% 이상	90% 이상	85% 이상	85% 미만	기준치 70점

※ 세부 평가 내역은 안전행정부 경영평가편람에 의함.

(2) 대행사업비 절감률(10점)

- 목 표: 평가연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최대 최저 목표치 설정 및 적용
- 근 거: 평가연도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편람
- 기 준

평가등급 (점수)	100점(S) (10점)	90점(A) (8점)	80점(B) (6점)	70점(C) (4점)	60점(F) (0점)	비 고
절감률	100% 이상 (배점비율)	90% 이상	80% 이상	70% 이상	70% 미만	기준치 70점

$$\text{※ 산출근거: 평점} = \frac{\text{평가년도 실적} - \text{최저목표}}{\text{최고목표} - \text{최저목표}} \times 100$$

(최고목표 = 전년도 실적 × 90%, 최저목표 = 전년도 실적 × 150%)

3. 사업 분야 전문성 강화 (50점)

(1) 시설관리 분야 (10점)

- 목 표: 에너지절감 목표 달성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
- 근 거: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(환경부 고시 2010-185) 및 평가연도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편람

○ 기 준

가. 기준배출량 대비 매년 4% 이상 절감(기준 배출량 : 2007 ~ 2009년 연평균량)

평가등급 (점수)	100점(S) (5점)	90점(A) (4점)	80점(B) (3점)	70점(C) (2점)	60점(F) (1점)	비 고
절감률	4% 이상	4.0% 미만~ 3.0% 이상	3.0% 미만~ 2.0% 이상	2.0% 미만~ 1.0% 이상	1.0% 미만~ 0.0% 이상	기준치 60점

※ 세부 평가 내역은 안전행정부 경영평가편람에 의함.

나.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“평가연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” 결과를 환산하여 반영

평가등급 (점수)	100점(S) (5점)	90점(A) (4점)	80점(B) (3점)	70점(C) (2점)	60점(F) (0점)	비 고
점 수	95점 이상	95점 미만 ~90점 이상	90점 미만 ~85점 이상	85점 미만 ~80점 이상	80점 미만~	기준치 70점

※ 세부 평가 내역은 안전행정부 경영평가편람에 의함.

(2) 체육 분야(10점)

- 목 표: 특기 특화 프로그램 개설 운영 및 고객편의제도 개선
- 근 거: 평가연도 사업계획
- 기 준

평가등급 (점수)	100점(S) (10점)	90점(A) (8점)	80점(B) (6점)	70점(C) (4점)	60점(F) (0점)	비 고
이행건수	5건 이상	4건 이상	3건 이상	2건 이상	2건 미만	기준치 70점

※ 세부 평가 내역은 평가연도 사업계획에 의함

(3) 문화예술분야(10점)

- 목 표 : 지역주민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 공연 유치 및 이용 증대
- 근 거 : 평가연도 사업계획
- 기 준 : 공연장 가동일 수 대비 유치일 수

평가등급 (점수)	100점(S) (10점)	90점(A) (8점)	80점(B) (6점)	70점(C) (4점)	60점(F) (0점)	비 고
대비율	95% 이상	90% 이상	80% 이상	70% 이상	70% 미만	기준치 70점

※ 공연장 가동일: 월요일, 공연장 시설점검일, 보수공사, 국경일을 제외함

(4) 도서관분야(10점)

- 목 표: 양질 정보·다양한 학습문화 기회제공
- 근 거: 평가연도 사업계획
- 기 준

평가등급 (점수)	100점(S) (10점)	90점(A) (8점)	80점(B) (6점)	70점(C) (4점)	60점(F) (0점)	비 고
건 수	6건 이상	5건 이상	4건 이상	3건 이상	2건 미만	기준치 70점

※ 세부 평가 내역은 평가연도 사업계획에 의함

(5) 주차분야(10점)

- 목 표: 경상사업 외 추가 수입 창출 노력
- 근 거: 평가연도 사업계획
- 기 준: 수입 창출 목표 및 운영 효율성 증대 관련 대상 기준 충족 여부

평가등급 (점수)	100점(S) (5점)	90점(A) (4점)	80점(B) (3점)	70점(C) (2점)	60점(F) (0점)	비 고
달성률	100% 달성	95% 달성	90% 달성	85% 달성	85% 미만	기준치 70점

※ 대상 기준

구 분	내 용
수입 창출 목표	연간 1,000만원 달성
운영 효율성 증대	- 주차관리 통합 프로그램 유상판매(입금액 기준) - 거주자 구획 전수 조사를 통한 신설구획에 따른 수입 - 기타 운영방법 개선을 통해 창출된 수입

4. 정부정책 준수 (5점)

(1) 안행부 정책 준수 : 경영평가 정책 준수 점수 활용(5점)

- 목 표: 안행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“공기업정책 및 운영지침 준수” 배점의 만점 획득

○ 기 준

평가등급 (점수)	100점(S) (5점)	90점(A) (4점)	80점(B) (3점)	70점(C) (2점)	60점(F) (1점)	비 고
획득률	100% 달성	95% 이상	90% 이상	85% 이상	85% 미만	기준치 60점

5. 발전적 노사문화 정착 (5점)

(1) 노사협력 프로그램 운영실적(5점)

○ 기 준: 노사협력 프로그램 이행 건 수

평가등급 (점수)	100점(S) (5점)	90점(A) (4점)	80점(B) (3점)	70점(C) (2점)	60점(F) (0점)	비 고
이행건수	7건 이상 (목표)	6건 이상	5건 이상	4건 이상	4건 미만	기준치 70점

※ 노사협력프로그램: 노사협의회, 직원체련대회, 노사워크숍, 노사간담회 등 노사 간
공동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

※ 연간 계획 건 수(프로그램 최저 실시건 수): 6회 + 추가실적
- 노사협의회(분기) 4회, 직원 체련대회(반기) 2회

[별표 4.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(단위: 점)]

점 수	목표치 (95점)이상	90점이상	80점이상	70점이상	기준치 (70점)미만
등 급	S	A	B	C	F

[별표 5. 연임보장 사유]

1.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· 경영평가 결과 2개 이상이 2년 연속 우수 평가등급 (“가”등급 , “A”등급 이상)을 받은 경우
2. 경영평가 결과 매년 평가등급이 상향된 경우로서, 임기 중 최종 경영평가에서 “나” 등급 이상 받은 경우

[별표 6. 임기 중 해임 사유]

1.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· 경영평가 결과 모두 최하위 평가등급 (“마”등급, “F”등급)을 받은 경우
2.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· 경영평가 결과 2단계 이상 평가등급이 하락된 경우
3.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· 경영평가 결과 모두 2년 이상 최하위 평가등급 (“마”등급, “F”등급)을 받은 경우
4. 특별한 사유 없이 현저히 악화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.
다만, 이사장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

[별표 7. 연봉 조정표]

(1) 사업 연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상 또는 삭감한다(단위 %).

가. 평가 등급에 따른 연봉조정 기준

평가등급		이행실적평가 결과				
		S	A	B	C	F
경영평가 결 과	가	10	5	3	0	0
	나	10	5	3	0	0
	다	5	3	0	0	0
	라	0	0	0	0	0
	마	-5	-5	-5	-10	-10

(2) 임기 중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1.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“가”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10% 인상한다.
2.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등급(“S”등급)을 받은 경우 10% 인상한다.
3.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· 경영평가 결과 1개 이상이 2년 이상 최하위 평가등급 (“마”등급, “F”등급)을 받은 경우 10% 삭감한다.
4.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· 경영평가 결과 1개 이상이 전년 대비 3단계 이상 평가등급이 하락된 경우 10% 삭감한다.

[별표 8. 성과급 지급률(단위:%)]

(1) 사업 연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가.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기준

평가등급		이행실적평가 결과				
		S	A	B	C	F
경영평가 결 과	가	450	415	377	339	301
	나	300	275	250	225	201
	다	200	175	150	125	100
	라	0	0	0	0	0
	마	0	0	0	0	0

(2) 임기 중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1.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‘가’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450%를 지급한다.
2.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 평가등급(“A”등급 이상)을 받은 경우 경영평가 결과 등급의 최고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.

(3) 지방공기업 경영대상(국무총리상 이상)을 수상한 경우 경영평가 결과 등급의 최고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.